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70호 2023. 4. 3.(월)

##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789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고성군 조례 제2790호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고성군 조례 제2791호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579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화 람									
--------	--	--	--	--	--	--	--	--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4월 3일

고성군 조례 제2789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를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 통영, 거제 지역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와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고성군에서의 활동과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역협의회의 직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

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선도 및 봉사활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사랑위원”을 “지역협의회”로, “대하여”를 “필요한 비용(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사랑위원”을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지방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 제목 “(지원 중단)”을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조금 반환)”을 “(지방보조금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로 본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4월 3일

고성군 조례 제2790호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4월 3일

고성군 조례 제2791호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현행)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사업 종류	세부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 및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다).라).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충전 사업자 영업소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 신청 직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배치기준	1.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시설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9㎡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소에 적용)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3.4.3.)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사업종류	세부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시설 및 배치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li> <li>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다).라).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적용한다.</li> </ol>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영업소	시설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보관실 : 38제곱미터 이상</li> <li>- 사 무 실 : 9제곱미터 이상</li> <li>-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제외한다)</li> </ul> </li> <li>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li> </ol>

※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함.

고성군 공고 제2023 - 579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4. 3.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 삭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주체 정비(안 제4조)
- 나. 시설물(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 임기 등의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 3)
- 라.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단체)는 202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경제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 1) 주소: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 2) 전화번호: (055)670-2243, 팩스번호: (055)670-230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붙임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의 시행)” 을 “(시설물의 관리·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설물의 총괄관리는 군수가 하되, 시설물의 운영은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설물 중 복지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6급)이 된다.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4(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을 “(사용료 징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및 대부료를 포함한다) 결정 및 징수,감면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지원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단체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의 총괄관리는 군수가 하 되, 시설물의 운영은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p> <p>② 군수는 필요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시설물 중 복지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p>

<신 설>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6급)이 된다.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설물 운영과 관련

<신 설>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마  
을이나 어촌계 등 단체가 시설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4(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  
게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및 대부료를 포함한다) 결정 및  
징수,감면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  
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관리자  
가 수행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  
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  
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  
용한다.